

납세자 권리보호제도 활용 안내문

□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란

- 관세 부과·징수 또는 관세조사 등 관세행정 집행 과정 등에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,
- 납세자가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면, 납세자보호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침해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

□ 관련 법령

- 「관세법」 제118조의2 ~ 제118조의5
- 「관세청납세자보호에관한지침」 (관세법령정보포털(CLIP)에 등재)

□ 기본 원칙

- 관세행정 소영역*을 대상으로 관세조사권 남용 방지, 권리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되,
※ 단, **범칙조사, 외환조사, 외환검사**와 내부행정사항 등은 **신청대상**에서 **제외**
- 동 제도는 행정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법을 초월한 권리구제는 불가하며,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대상은 불복제도 우선 이용

□ 신청방법

- 고충민원신청서 등 해당 서식 작성 후, 관할세관 방문, 우편, 전자우편(E-Mail) 등을 통하여 신청
※ **신청기간**은 별첨 납세자권리보호 제도 처리 프로세스 참고

□ 접수처

- ◆ 방문 접수 : 서울본부세관 세관운영과
- ◆ 우편 접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
서울본부세관 세관운영과 납세자보호 담당자
- ◆ 전자우편 접수 : Seouladv@korea.kr
- ◆ 유선 문의 :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(02-510-1063~4)

□ 납세자 권리보호 신청대상

신청 유형	내 용	신청 서류
【권리보호요청】	■ <u>세관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</u>으로서, 관세행정 집행 또는 집행이 예정되는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이 재량을 남용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	
① 관세조사 분야	- 관세조사*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세관공무원의 행위 등이 대상 * 관세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에 해당하는 법인심사와 기획심사	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(별지30호)
② 일반 관세행정 분야	- 관세조사 분야 이외의 관세행정 분야와 관련하여 세원 관리 및 체납처분 등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	권리보호 요청서 (별지31호)
【고충민원】	■ <u>세관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</u>으로서,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	고충민원 신청서 (별지5호)

□ 유형별 세부 신청대상

① 관세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

구분	내 용
신청 대 상	※ (관세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) <u>세관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</u>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관세조사 또는 관세조사 중인 세관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함 ①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 ② 명백한 탈루혐의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재조사 ③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(일시)중지 ④ 관세조사 중인 세관공무원의 위법·부당한 행위 - 관세조사와 관련없는 장부 등 제출요구 - 임의의 조사 기간연장·범위확대

구분	내용
신청대상	-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 등 임의보관 - 납세자에게 금품·향응 등 요구 -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(사적 사용) - 관세조사 종결 통지한 후 질문 또는 장부 등 조사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

② 일반 관세행정 분야 권리보호요청 대상

구분	내용
신청대상	※ (일반 관세행정 분야 권리보호요청) 「관세조사 분야」 이외의 관세행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대상으로 함 ① 고충·불복·체납완납 등의 절차 완료 후 후속처분 지연 ② 사전예고 없이 압류 또는 과세자료 소명없이 고지(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) ③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 요청에 대한 거부(지연) ④ 납세자에게 금품·향응 등을 요구 ⑤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(사적 사용) ⑥ 과세자료 처리와 관련 없는 자료(소명)를無理하게 요구 ⑦ 해명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처리 지연 ⑧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적법 절차 미준수로 인한 권리침해 ⑨ 현장확인 시 출장목적과 련련 없이無理하게 서류 등 요구나 확인 ⑩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

③ 고충민원 대상

구분	내용
신청대상	※ (고충민원) <u>세관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</u> 으로서,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납세자의 권리·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납세자보호관 제외 업무와 고충민원 제외대상 업무 이외의 모든 행정처분이 대상
고충민원 제외대상	※ (제외대상)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또는 「관세법」에 따른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로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것으로 불복청구 등의 주된 이유와 고충민원의 주된 이유가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, 사유가 있는 사항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 ① 관세법 등에 따른 쟁송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②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③ 감사원장 등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④ 밀수신고 등 고소·고발 ⑤ 관세법상 통고처분 및 고발 ⑦ 관세법 등 경정청구,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⑧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

□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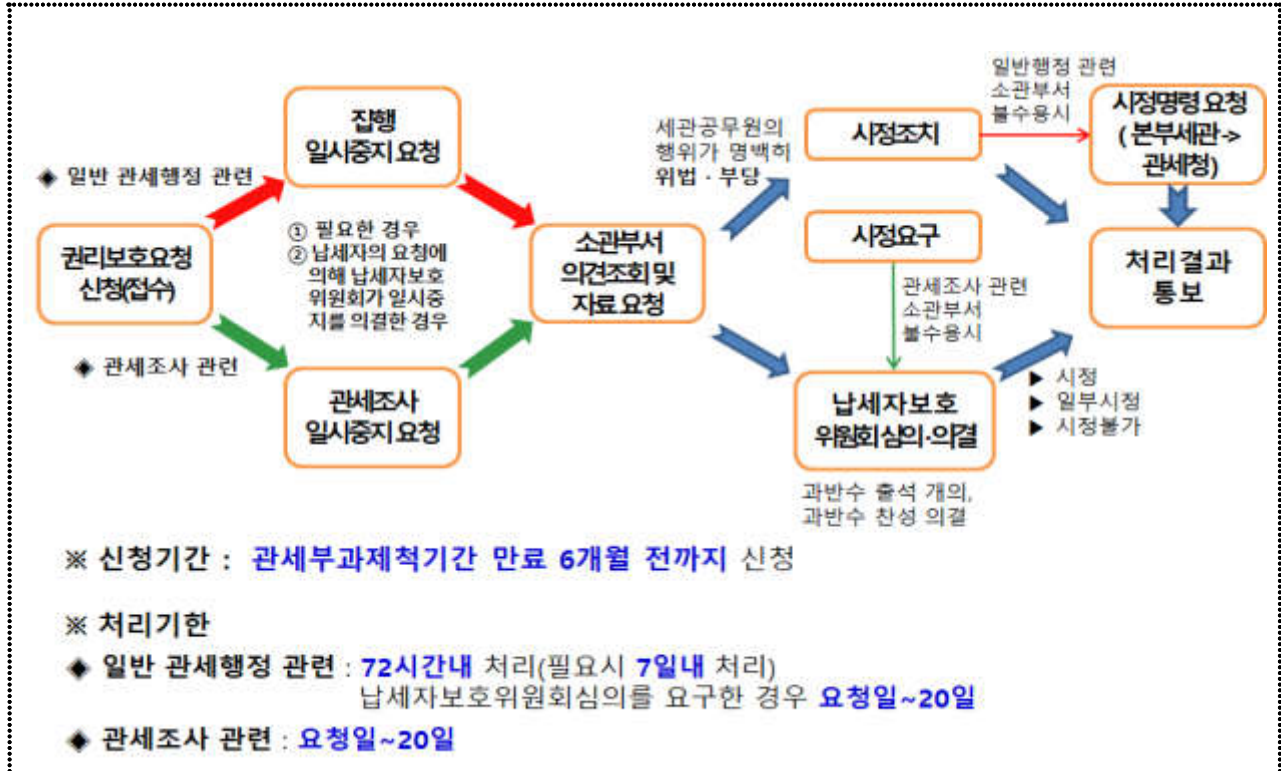
- 납세자로부터 권리보호 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, 납세자보호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권리보호 요청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,
- 관세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, 관세조사팀 교체, 위법·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권한을 행사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

※ 별첨 납세자권리보호 제도 처리절차 참조

별첨

납세자권리보호 제도 처리 프로세스

◎ 권리보호요청 처리절차



◎ 고충민원 처리절차

